

# 이천시'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(제1차)심사보고서

1996. 7. 1.  
내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6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1차(96.6.22), 제2차(96.6.24) 내무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이천시 승격에 따른 중리동사무소 신축 및 독신자 공무원의 숙소를 건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#### 1) 취득대상 재산

○ 건물 : 2동  $1,210\text{m}^2$  966,700천원 → 이천군이 96. 3. 1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, 중리동사무소를 신축하고, 독신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를 건축하고자 함

#### 2) 처분대상 재산

○ 건물 : 2동  $125.12\text{m}^2$  7,131천원 →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내 기존의 중리동 경 노당과 기상관축소를 철거코자 함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안봉환)

○ 본 동의안은 이천군이 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중리사무소 신축 대지면적  $660\text{m}^2$ , 추정가액 5억 6천 520만원과 시청 독신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 신축 대지면적  $550\text{m}^2$ , 추정가액 4억 150만원에 대한 건축이며,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내 기존 건물 면적  $69.13\text{m}^2$ , 평가액 393만 9천 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·능률화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,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공유재산 관리계획

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부동의 (만장일치)
7. 기타사항 : 없음